

does not ipso facto entail the equal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e) of the Convention. The State party is requested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th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y all nationalities of China and regarding steps taken to ensure that the minority population benefits from the general economic growth. In this context, the State party is requested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local and regional cultures and traditions are also promoted and the rights of the populations fully respected.

14. While noting the State party's information in this regard, some members of the Committee remain concerned with regard to the actual enjoyment of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by people belonging to national minorities in the State party, particularly in the Muslim part of Xinjiang and in Tibet. The Committee recalls that a distinctive religion is integral to the identity of several minorities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review legislation and practices that may restrict the right of persons belonging to minorities to freedom of religion.

15. While recognizing efforts made, which have resulted in an increased number of schools and a decrease of illiteracy in minority region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continuous reports of 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the right to education in minority region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ibet, and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urgently ensure that children in all minority areas have the right to develop knowledge about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as well as the Chinese, and that they are guaranteed equal opportuniti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access to higher education.

16. While noting the State party's efforts to facilitate integration and naturalisation of Indochinese refugees in Mainland China,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different standards of treatment are applied to Indochinese asylum seekers on one hand and asylum seekers of other national origins on the other, notably with regard to the right to work and education. Particular concern is expressed regarding the treatment of asylum seekers from North Korea, who are reportedly systematically refused asylum and returned, even in cases when they have been considered to be refugees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guarantee and ensure equal treatment of all refugees and asylum-seekers. To this end the State party is recommended to consider pursuing the adoption of formal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in order to implement objective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17. With reference to article 2, paragraph 1(d)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takes note of on-going consultations, but reiterates its concern about the continuous absence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legal provisions protecting persons from racial discrimination to which they may be subjected by private persons, groups or organizations. The Committee does not accept the argument put forward for not initiating such legislation, i.e. that such legislation would not be supported by the society as a whole. It is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of the State party and to the local authorities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at the existing unsatisfactory situation be thoroughly reviewed and that appropriate legislation be adopted to provide appropriate legal remedies and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colour, descent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similarly to what has been done with regard to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gender and disability.

1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 regarding the situation of foreign domestic worker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inly from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and the existence of certain rules and practices, such as the so called "two-weeks rule", which may be discriminatory in effect.

19.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in subsequent reports, inter alia, detailed information on judicial cases relating specifically to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n the Hong Kong and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ranting by courts of adequate reparation for such violations.

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next State party report contain socio-economic data disaggregated by national and ethnic groups and information on measures taken to prevent gender-related racial

discrimination, including in the area of trafficking and reproductive health. The Committee also wishes to receive statistics, disaggregated by nationality and region, relating to detention, imprisonment, alleged, investigated and prosecuted cases of torture,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1. The State party is also invited to provide in its next report further information on the powers of the State Ethnic Affairs Commission and the impact of activities undertaken by it.

22. It is noted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made the optional declar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possibility of such a declaration be considered.

2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atify the amendments to article 8, paragraph 6, of the Convention, adopted on 15 January 1992 at the Fourteenth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2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s reports continue to be made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from the time they are submitted and that the Committee's observations on them be similarly publicised.

2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ubmits its tenth periodic report jointly with its eleventh periodic report, due on 28 January 2003, and that it addresses all points raised in the present observations.

\*\*\*\*\*

#### SOUTH KOREA (Tier 3)

South Korea is a country of origin and transit for trafficking in persons. Young female Koreans are trafficked primarily for sexual exploitation, mainly to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other Western countries and Japan. Female aliens from many countries, primarily Chinese women, are trafficked through Korea to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In addition to trafficking through the air, much transit traffic occurs in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ways by ship.

While South Korea is a leader in the reg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generally, the Government has done little to combat this relatively new and worsening problem of trafficking in persons. Although it does prosecute alien smuggling activities such as visa fraud and possession or sale of fraudulent civil documents, there are no laws that specifically address trafficking. There are statutes against kidnapping and sale or purchase of sexual services with a juvenile, and maximum penalties for these are commensurate with those for rape. Although corruption occurs, there is no evidence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involved in trafficking in persons. Aliens are treated as immigration violators and deported. No government assistance is available for trafficking victims or to support NGO's involved in assisting trafficking victims.

## 외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응

### 4월 탈북지원단체 관계자 중국 체포사건 경위 및 처리결과(외교부의 대응 포함)

- 중국정부는 금년 4월 중국내에서 탈북자 및 대북한 지원활동을 전개해오던 JTS 산하 '좋은 벗들' 소속 회원 5명을 국가안전 위해협의 등으로 구금, 조사를 진행하다 6월초 동인들을 강제출국시킴.
- 우리정부는 5.8 중국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 5명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중국정부 관계자를 접촉하여 중국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금중인 우리국민들을 조속히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또한, 중국측의 우리국민에 대한 장기간 구금조사와 조사 사실의 지역 통보에 대해 중국정부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영사가 현지에 출장하여 구금중인 우리국민들을 면담, 이들의 건강과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중국측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국민들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로 동인들은 6.8 석방되어 전원 귀국하였음.

- 대다수의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탈북자를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탈북자 처리는 중국의 주권사항으로 중·북한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 여타 국가들의 경우에도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국을 통한 탈북자들의 한국 귀순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극력 회피
  - 인도적 차원에서 UNHCR에 탈북자문제를 의뢰하거나 우리측과의 양자교섭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를 우리측에 인계

## 조선족 사회붕괴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대책

- 조선족들은 한국으로의 입국이외에 중국의 개혁개방 아래 동북3성 지역에서 북경, 상해 등 대도시로의 이주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는 조선족의 상당수가 대도시에 거주함.
- 상당수 조선족 인구의 대도시 이동에 따라 연변자치주내 조선족 인구비중 감소로 인해 향후 조선족의 실질적 자치권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연변의 경우 1952년 자치주 설립당시 조선족이 전체인구의 62%를 차지했으나 1965년 46%, 1976년 41%, 1996년 39%로 감소하고 있으며 동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에는 자치주 전체인구의 20%, 2050년에는 15%로 감소되어 민족구역 자치 실현조건(30% 이상)을 상실한 가능성
- 또한 조선족 여성들의 한·중 국제결혼 증가 및 북경 등 대도시 진출(주로 한국인 상대업소 종사)로 조선족 사회내 성비 불균형 문제가 대두하고, 2세의 출생률도 감소함에 따라 조선족사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
  - 연변 용정시의 경우 총각:처녀 비율이 1996년 20:1에서 1997년 22:1로 증가

- 일단 도시로 진출한 조선족 여성은 농촌지역의 조선족 남성과의 혼인을 기피
- 상당수의 조선족 남성들이 북한출신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례 증가

- 인구의 대규모 이동과 출산률 감소등 학생원천의 감소로 조선족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 많은 조선족 학교가 존폐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임.
  - 연변의 조선족 소학교는 1985년 419개에서 1995년 177개로,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감소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중국정부의 입장과 배치되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선족이 중국사회에서 성공하여 존경받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선족 사회의 육성과 발전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2000년말 현재 한국기업의 동북3성 투자는 건수 기준으로 중국 전체투자의 약 40%차지), 조선족과의 실질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시행할 예정임.

## 중국 체류 탈북자의 강제송환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중국 외교전략 추진내용과 중국측 입장

- 6.30 장길수 가족의 국내송환이후 중국 당국에 의한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으나, 중국 정부 및 공산당 인사들은 중앙 차원에서 여사한 탈북자 단속 강화를 지시한 바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사들도 특별히 새로운 단속 강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 다만 정부는 상기 사건을 계기로 중국측이 우리 민간단체(탈북자 지원단체, 선교단체) 및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측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도 중국법령을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협약상의 난민이 아닌 “식량획득을 위한 불법 월경자”(economic migrants)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처리도 중국의 주권사항으로 중·북한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관여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감안, 지난 수년간 중국정부에 대해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해줄 것과 이들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왔음.

정부는 앞으로도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UNHCR 등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탈북자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 중국, 몽골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조건 및 과정

### (중국)

- ‘난민협약’의 당사국들은 난민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협약당사국이 자국의 헌법과 행정조직을 고려하여 마련하고 있음.
- ‘난민협약’의 당사국인 중국은 현재 난민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몽골)

- ‘난민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몽골은 국제법상으로 난민을 인정할 의무가 없음.

## 중국, 몽골에서 탈북자에 대한 법적인 지위 문제

### (중국)

-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밀입국한 단순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고, 탈북자 처리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이며, 중·북한간의 문제로서 제3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임.

### (몽골)

- 몽골정부는 현재까지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난민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난민협약’상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임.

## 중국, 몽골에서 탈북자에 대한 북한 및 제3국으로의 강제 송환 현황

### (중국)

- 중국정부는 북한으로 송환한 탈북자 숫자 및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 숫자 등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에 설명하지 않고 있어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몽골)

- 몽골정부가 탈북자들을 직접 북한으로 송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 몽골에서 탈북자에 대한 처리, 처벌 현황

### (중국)

-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상 범법자의 경우 등에만 북한으로 송환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몽골)

- 몽골정부측은 탈북자문제 관련 우리측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

## 중국과 몽골의 탈북자와 관련하여

### 1. 북한 탈북자 관련한 국제단체와 NGO 현황

- 구체적인 현황 파악 자료는 없으나 북한인권·난민 국제 회의(1999년, 2000년)를 주관한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탈북자 지원 국내 NGO)을 통해 파악한 단체는 아래와 같음.
  - 국제인권협회, 국제인권센터,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미국 오로라 재단, 미국 방위포럼재단, 미국 미네소타 인권변호사협회, 일본 RENK, 프랑스 중국연대, 프랑스 국경없는 의사회

### 2.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NGO 현황

- 국내 NGO 현황
  -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좋은 벗들,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두레마을, 탈북난민보호 유엔운동본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등
- 해외 NGO 현황
  - AEGIS 재단, Exodus 21 등

### 3. 외교부가 국내외 단체와 탈북자 문제를 놓고 협조한 내용

- 탈북자 지원 NGO와 간담회 개최
  - 2001.7.10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와의 간담회 개최
  - 2001.5.25 외교안보연구원 주관 통일외교연구사업(탈북자 부문) 워크샵 개최
  - 2001.4.13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2001.3.6 외교부 정책기획관 주재 탈북자지원 NGO와 간담회
  - 2000.4.11 통일부 주관 탈북자 문제 워크샵에 참여
- 수시로 탈북자 지원NGO와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사안에 대해 협조

## 중국내 북한 탈북자의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 탈북자는 94년 김일성의 사망 및 95년 대홍수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96~97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98년이후 북한 식량사정 호전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중국내 탈북자 수는 불법체류의 성격상 정확한 실상 파악이 어려우나 우리정부는 1~2만, UNHCR은 최대 3만, 민간단체는 10~2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중국 정부에 대해 공식, 비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 줄 것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음.  
※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각종 양자간 접촉 및 계기 활용
- 정부는 앞으로 한·중 우호관계의 큰 틀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UNHCR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탈북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음.

## 중국의 탈북자 북송자 수

-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밀입국한 단순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고, 탈북자 처리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이며, 중·북한간의 문제로서 제3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임.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송환한 탈북자 숫자 및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 숫자 등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에 설명하지 않고 있음.

**중국체류 탈북자 처리는 중·북한간에 해결할 문제  
이지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중국측의 견  
해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

- 정부는 중국내 체류 탈북자 문제관련, (1)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 줄 것과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중국측에 협조 요청해 왔음.
- 그러나 국제법상 중국내에 체류하는 탈북자 문제 처리의 관할권이 중국에 있으며, 탈북자에 대한 난민판정의 주체 또 한 관할국이 중국임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가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개입할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이 현실임.
  - 탈북자들이 북한 국적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탈북자들의 국적국인 북한과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이 각각 대인고권과 영토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국제법적 현실임.
  - 우리 헌법상의 영토 조항을 근거로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제법상 탈북자들이 북한 국적인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한·중 우호관계의 큰 틀 속에서 탈북자들의 인도적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을 계속할 예정이며, UNHCR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탈북자들의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임.

**탈북 난민문제 관련  
UNHCR 등 협조**

1. 우리 정부가 북한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UNHCR 등 관련 국제기구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2001.6.26 장길수 가족의 UNHCR 북경사무소 진입시, 우리 정부는 장길수 가족이 자유의사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UNHCR측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
  - 1999.11.17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 불법 월경한 탈북자 7인에 대해 이들이 UNHCR을 통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UNHCR측에 협조를 당부
  - 몇몇 국가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경우, UNHCR의 개입을 통해 한국으로 이송되고 있음.

## 탈북자 김용화 문제 관련

- 95.6월 국내로 밀입국한 김용화는 관계부처에서 동인을 중국 국적으로 판단하여 법무부가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려 하자 95.9월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서울 고등법원 제2특별부의 김용화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우리부는 관련 공관을 통해 요령성 공안청에 김용화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음. 요령성 공안청은 김용화가 요령성 무순현에서 살았으며 신분증번호와 중국국민(中國公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울러 1990년에 이혼한 후 실종된 사실을 97.1.8자 통보함.(1997.1.10, 주중대사관 보고)
- 상기 판단에 따라 관련부처는 동인이 중국 국적을 가진자로서 탈북자 정착지원법상 지원대상은 아니나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과거 탈북 사실을 근거로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참고사항>

- 참고로, 주한 중국대사관은 97.11월 동인에게 중국 국적인임을 이유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일본 정부가 98.5월 일본으로 밀입국한 동인의 국적을 중국 정부에 확인 결과 중국 국적인으로 판명된 사실이 있음.

## 탈북자 문제 관련 대책

### 1. 탈북자 숫자

- 중국내 탈북자 현황은 중국 당국이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계속 이동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그 숫자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함.
  - UNHCR은 중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가 3만명 내외인 것으로 추정
  - 일부 중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측이 중국내 탈북자 숫자 및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경우, 오히려 북한과의 국경조약상 의무에 따라 해당 탈북자를 송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을 생각,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

### 2. 탈북자 보호

- 중국주재 우리 공관에 귀순요청에 온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중국내에서 직접적인 귀순지원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중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탈북자 대하여는 약간의 정착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

- 외교적으로 처리 가능한 탈북자에 대하여는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협상을 통해 국내송환을 지원함(장길수 가족 등).
- 기타 주중 UNHCR 등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공동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탈북자의 難民지위 인정 및 인권보호를 요청하고 있음.

### 3.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당관 및 인접국 주재 우리공관, 국제기구 등의 공동 노력으로 일부 탈북자가 무사히 국내로 송환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당관은 탈북자들에 대해 가능한 인도적 지원을 다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당관의 노력이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하게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를 난처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오히려 다수 탈북자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바, 당관은 앞으로도 탈북자 보호 관련 업무는 조용한 방법으로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중시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임.

### 4. 탈북자 문제 관련 대책

- 탈북자에 대해서는 한·중간에 명백한 입장 차이가 있으며, 그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기 어려움.
  - 기본적으로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불법입국자로 간주, 탈북자 문제는 중·북한간의 문제로서 제3국인 우리나라의 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

- 다만 그간 우리의 노력과 탈북자를 위하여 제반 어려운 상황의 경험을 통해 중국측도 우리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양국간에는 현재 여사한 문제가 한·중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장애로 작용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그동안 우리는 탈북자 문제가 단순한 국제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도적·동포애적 문제이므로 중국측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특별한 고려를 해 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 입장에 유의하겠다는 반응
- 우리는 한·중관계의 확대·발전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같은 양국관계 발전의 큰 틀 속에서 탈북자 문제 관련 중국과의 대화와 협조를 강화중임
  - 금년 6월 길수가족 7인의 UNHCR 사무소 진입 사건시 한·중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 모색
- 앞으로도 당관은 탈북자들이 중국내에서 인도적 처우를 부여 받고 또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중국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임.
  - 또한 탈북자들이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국 정부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과 협조로 국내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계속
- 다만, 탈북자 문제가 우리에게는 인권문제일 수 있으나, 탈북자가 체류하는 제3국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점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음.

- 국제법,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  
이므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 이해 필요

## 5. NGO와의 협조

- 당관은 외교 공관으로서 무엇보다 주재국의 실정법을 존중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 과정에서 UNHCR 등 국제기구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 탈북자 문제와 관련

1. 정부당국 추정, 1998년-2001년 연말 기준(2001년은 7월 말 기준) 각 체류국별 탈북인 수

○ 알 수 없음.

2. 정부당국 확인, 1998년-2001년 연말 기준(2001년은 7월 말 기준) 각 체류국별 탈북인 수(한국입국자 수)

입국경로	98	99	00	01.7.31
총 입국자	71	148	312	309

3. 정부당국 추정, 1998년-2001년 연말 기준(2001년은 7월 말 기준) 각 체류국별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의 수

○ 알 수 없음.

4. 정부 당국 확인 1998년-2001년 연말 기준(2001년은 7월 말 기준) 각 체류국별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의 수

○ 아는 바 없음.

5. 1998-2001년 연말기준(2001년은 7월 말 기준) 제3국에 정착한 탈북주민 수(국내입국 탈북자는 제외)

○ 아는 바 없음.

6. 1998년 이후 해외 탈북자들의 국내이송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북한 강제송환 방지를 위하여 한국정부가 각국 외교당국에 취한 구체적 조치

가. 중국

- 외교통상부는 탈북자 문제관련, 공식·비공식 계기를 통해 중국측이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줄 것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탈북자 문제관련 외교부 차원에서 중국측과 교섭한 예는 아래와 같으며, 이와는 별도로 실무직원들은 수시로 중국측과 교섭을 하고 있음.

나. 러시아

- 우리 정부로서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의 큰 틀속에서 탈북자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대처하고 있음.

- 다만, 탈북자 문제에 내재한 민감성과 한·러 양국간의 입장 등을 감안, 내실있고 차분한 협의를 통해 전향적인 해결을 계속 추진

7. 1998년 이후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UNHCR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 등과 취한 협조 내역

가. 국제기구와의 협조

○ 유엔인권위원회

-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1999.3)에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특별연설
- 제56차 유엔 인권위원회(2000.3.29) 참석
-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2001.4) 참석
- 제53차 유엔인권소위(2001.8)에서 우리 대표의 건의로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됨

○ UNHCR과 수시로 탈북자 관련 업무 협조

나. NGO와의 협조

○ NGO와의 간담회 개최

- 2000.4.11 통일부와 공동으로 워크샵 개최
- 2001.3.6 외교부 주재 탈북자 지원 NGO와의 간담회 개최
- 2001.5.25 외교안보연구원 주관 탈북자 워크샵 개최
- 2001.7.10 탈북자 지원 NGO("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 운동본부")와 간담회 개최
- 2001.7.20 통일부와 공동으로 NGO와의 오찬간담회 개최

- 2001.4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의 난민지위부여 청원서 전달 협조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중국 교섭일지

- 외교통상부는 탈북자 문제관련, 공식·비공식 계기를 통해 중국측이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줄 것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탈북자 문제관련 외교부 차원에서 중국측과 교섭한 예는 아래와 같으며, 이와는 별도로 실무직원들은 수시로 중국측과 교섭을 하고 있음.
  - 94.4 주중대사관, 중국 외교부에 탈북자 문제 공식 제기
  - 96.7 주중대사관, 중국 외교부에 탈북자가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인도적 배려 요청
  - 97.12 주중대사관, 중국 외교부에 탈북자 송환에 대한 인도주의적 우려 표명 및 강제송환치 않을 것을 요청
  - 98.12 주중대사관, 중국 외교부에 탈북자 송환보도와 관련, 사실여부 확인 및 난민지위 인정 요청
  - 99.1 우리정부,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청

- 99.8 외교부장관, 방한중인 중국 민정부장에게 탈북자 관련 중국의 협조를 요청
- 99.9 외교부장관, APEC 정상회담시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자 문제 제기
- 99.12 외교부장관,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대우해줄 것을 요청
- 2000.1 외교부 차관보, 중국 외교부 차관보에게 탈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처리 요청
- 2000.4 외교부장관,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자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
- 2001.6 장길수 가족의 한국 송환을 위한 중국정부와의 교섭
- 2001.7 외교부장관, 중국외교부장에게 탈북자문제 처리 관련 인도주의적 처리 요청

## 탈북자/인권 관련

### 1.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방향

- 정부에서는 탈북자 문제를 제3국 체류 탈북자 처리 대책, 국내입국후 관리대책, 탈북 발생원인 제거를 위한 장기대책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제3국 체류탈북자에 대해서는 탈북자의 유형별로 대처하면서 국내입국 희망자는 전원수용한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있음.
  - 탈북자의 국내이송은 외교적 분쟁 소지 예방을 위해 체류국 정부와의 협조 또는 양해하에 시행
  - 탈북자 체류국의 정부가 UNHCR의 개입에 동의하고 동 기구를 통한 직접 처리가 효과적일 경우, UNHCR에 협조 요청
- 국내입국 탈북자의 관리대책으로, 국내입국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하나원」 등 국내 관련시설의 확충, 전문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고, 기초생계·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등 탈북자 정착지원 시책을

강화하여 나가기 위한 법·제도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장기 대책으로, 대북포용정책의 적극 추진과 미·일 등 국제사회의 협조로 북한의 경제적 안정과 인권개선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질적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북한내 식량난을 포함한 탈북요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

### 2. 탈북자의 국적

- 탈북자는 우리 헌법(제3조 영토조항) 및 대법원 판례(96누 1221, '96.11.12 선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에 대한 한국국적의 인정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당해 제3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가와 직결됨.
- 우리 헌법과 대법원판례 등 국내법상의 法理에 입각한 외교적 보호권 주장은 남북한 모두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과 국적에 관한 국제법원칙('진정한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법적으로 그리고 제3국과의 관계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특히, 위의 대법원 판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실효적 관할권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법원에 법률적

구조를 청구한 경우에서 국적문제를 다룬 것이므로 우리의 관할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제3국에 체류중인 북한주민에게까지 자동적으로 확대 적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3. 탈북자 규모

- 중국내 탈북자의 규모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며 식량구득을 위한 일시 월경자를 포함하고 있어 항상 유동적임.

### 4.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별 탈북자 규모

- 알 수 없음.

### 5. 탈북자의 일반적인 귀순경로 및 절차

#### 가. 귀순경로

- '80년대 이전에는 휴전선을 통한 직접입국이 80% 이상이었으나 '90년대는 중국 및 러시아를 통해 주로 입국
- 2000년 이후부터는 입국경로가 중국 이외에 몽골, 동남아 일부 국가로 다양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나. 절차

- 탈북자가 공관에 귀순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관직원이 탈북자를 면담, 탈북자임이 확인되면 체류국과 교섭을 통해 한국으로 이송
- 탈북자 체류국의 정부가 UNHCR의 개입에 동의하고 동 기구를 통한 직접 처리가 효과적일 경우, UNHCR에 협조 요청
  - 몇몇 국가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경우에는 UNHCR의 개입을 통해 한국으로 이송
- ※ 중국체류탈북자의 경우 대부분 신분을 위조하거나 밀항선을 이용하여 입국함.

### 6. 탈북자 조사/교육/정착절차 및 지원 내용, 7. 탈북자의 출신지별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 통일부 소관사항임.
- 8. 탈북자의 귀순이유(유형별 분류/조사방법 명기)
  - 국내입국시 개별면담 조사자료를 참조하여 귀순이유 분류
    - 과거에는 주로 체제불만·처벌우려 등(52%)이었는

데 '99년부터는 처벌우려(25%)와 함께 생활고 (27%) 및 가족권유(22%) 등 체제외적인 요인이 대부분(74%)임.

9. 지난 5년간 월별 탈북자 수, 10. 앞으로 5년간 예상 탈북자 수

- 통일부 소관사항임.

11. 탈북자가 늘어날 경우, 외교부의 대책

- 탈북자 체류국별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조 및 국제적 여론환기 노력 지속

- 국내외 탈북자지원단체와의 접촉을 통하여 정확한 탈북자 현황파악 노력 지속

- 탈북자 지원관련 예산 증액추진

12. 공관에 대한 탈북자 처리 지침

- 해외체류 탈북자중 한국행 희망자는 전원 수용하며, 제3국 정착 희망자에게는 최대한 정착지원을 원칙으로 함.

- 탈북자의 국내이송은 외교적 분쟁 소지 예방을 위해 체류국 정부와의 협조 또는 양해하에 시행

- 탈북자 체류국의 정부가 UNHCR의 개입에 동의하고 동 기구를 통한 직접 처리가 효과적일 경우, UNHCR에 협조 요청

13. 해외 탈북자 시설 유무

- 해외탈북자를 위한 우리정부 시설은 없음.

14. 지난 3년간 강제송환된 탈북자 추정치

- 1999.12 중국에서 러시아로 불법입국한 7명의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 등이 공식 확인된 바 있으나 그 외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15. 외교부가 확인한 강제송환 탈북자 숫자와 각각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가. 강제송환된 탈북자 수

- 1999.12 중국에서 러시아로 불법입국한 7명의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 등이 공식 확인된 바 있으나 그 외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나. 99.12 강제송환된 7명 건 관련 외교부의 대응

-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 러측이

탈북자 7명을 중국측에 인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본국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2000.1.10)

- 외교통상부 장관은 탈북자 7명을 중국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강력히 항의함.(2000.1.13)
- 수시로 한국 및 관계국 주재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관계국의 협조요청 및 협의 활동을 전개함.

16. 정부가 북한에 공식/비공식으로 탈북자나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례 중 북한의 반응이 있었던 예
- 99.3.25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인권위 특별 연설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 먹을 권리와 이전의 자유가 국제인권규약에서 불가침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

- 이와 관련, 북한은 연설이 있기 전 주 유엔대표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우리측을 비난하고, 연설이 끝난 후에는 답변권을 행사함.

- 2001.8.3 제53차 유엔인권소위에서 박수길 의원은 탈북자 문제를 언급하고 탈북자를 위한 국제 보호망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
  - 이에 대해 북한측은 답변권을 행사하고 중국과 북한간에는 탈북자 문제가 없다고 주장

#### 17.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

- 통일부 소관사항임.

#### 18. 인권문제해결에 대한 외교부의 방안

- 우선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음.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하여 북한이 개방을 하고 외부세계와 활발히 교류, 협력함으로써 점차 인권 개선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19. 탈북자들에게 국제난민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

- 난민협약(1951년)과 의정서(1967년)에는 난민의 지위 결정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당사국들로 하여금 국내차원에서 이행에 관한 조치를 선택할 여지를 두고 있음.

- 탈북자의 대다수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탈북자는 난민협약 상의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처리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으로서 국제기구가 간여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현재 UNHCR도 체류국의 협조 없이는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임.

#### 20. 2000년 이후 외교부가 탈북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조치 일체

-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의 경우, 국가별로 양자 교섭을 통해 탈북자의 한국이송을 추진함. 만약 탈북자 체류국의 정부가 UNHCR의 개입에 동의하거나 또는 동 기구를 통한 직접 처리가 효과적일 경우, UNHCR에 협조를 요청하여 한국으로 이송함.

- 탈북자의 대다수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탈북자를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법체류자로 보고 이들의 처리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으로서 국제기구가 간여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공식, 비공식계기를 통해 중국측이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 줄 것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21. 미국, 일본,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

- 2000.6 중국의 탈북자 송환가속화 기사(뉴욕타임즈) 관련 미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며 인도적 견지에서 UNHCR을 통한 구호 활동을 지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는 중국내 탈북문제자와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음.
-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으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탈북자 처리 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이며, 중·북한간의 문제로서 제3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임.

#### 22. 탈북자의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국제적 연대추진 현황(계획)

- 탈북자의 신변보호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해 NGO간에 국제 연대에 관하여는 파악되지 않으나, 개별 NGO 간의 접촉은 활발한 것으로 보임.

#### 23. 탈북자가 늘어날 경우, 정부의 대책

- 11번 질문과 동일함.

#### 24. 5월 미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김순희씨 사건 경위 및 현황

##### 가. 경 위

- 탈북여성 김순희(34세)는 1994년 탈북하여 중국 연변에서 6년간 체류, 2000.11 홍콩-필리핀을 거쳐 멕시코로 입국후 미국으로 불법입국을 시도중 서류 미비로 적발되어 강제출국자 수용소에 수용됨.

※ 북한내 거주지: 함경북도 무산

직업: 초등학교 교원

가족: 아들 1명(9세), 현재 연변 체류중(북한에서 이혼하였다 함)

- 미국인권단체(Casa Conelia Law Center)의 도움으로 이민국에 난민지위부여 신청

##### 나. 현황

- 미국 인권단체의 주선과 재미동포 한청일(전 샌디에고 한인회 부회장)의 보증으로 수용소에서 방면(5.8)되어 현재 한청일씨의 보호하에 있음.

- 우리정부는 미국 정부가 동건을 처리함에 있어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25. 난민인정을 위한 정부 대책 및 관련 일지

- 난민협약과 의정서에는 난민의 지위 결정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당사국들로 하여금 국내차원에서 이행에 관한 조치를 선택할 여지를 두고 있음.

- 탈북자의 대다수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탈북자는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처리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으로서 국제기구가 간여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UNHCR도 체류국의 협조 없이는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임.

- 이와 같이 중국내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므로 난민인정보다는 탈북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당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

- 통일부 소관사항임.
- 26. 북한 탈북자 현황, 27. 탈북자들의 한국입국자 현황, 28. 입국 탈북자들의 범죄 현황, 29. 입북탈북자중 인성 불량자, 범죄자 현황 및 관련 분석보고서, 30. 입국 탈북자들의 해외거주 현황, 31. 입국탈북자들의 한국이탈자 현황

## 탈북자문제 관련

### 자. 통상적인 국제법상 난민인정 요건(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
  -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소극적 태도

- 정부는 인권이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인식하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왔으며, 국제기구에서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왔음.
  - 지난 1999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및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추구해 오고 있음.
-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민 지위 인정문제 관련,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에서 인정되고 있는 난민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난민의 지위 결정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다양한 유형의 난민발생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에 미흡한 것이 현실임.
- UNHCR도 난민협약 체제를 회원국들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협의를 회원국들간에 진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난민협약의 기본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하에 난민개념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난민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규정을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UNHCR은 해당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난민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low profile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루고 있음.

- 결국,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로 나와 문호를 개방하고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긴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관련 지난 3월 북한대표단이 UNHCR 본부를 방문하고 난민법 세미나 참석하였으며, 6월 북한 자연재해민에 대한 UNHCR의 구호지원 제공 관련 북한과 UNHCR의 양해서한에 서명한 것 등은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봄.
- 우리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 편입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이와 동시에 탈북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관련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측면 지원 획득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 첨 부: 북한 인권관련 국제무대에서의 언급내용

#### [첨 부]

##### 1.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1999.3월)에서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특별연설

- 탈북자 문제를 제기, 먹을 권리와 이전의 자유가 국제인권 규약에서 불가침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
- 최근 특사로 석방된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을 북한으로 보낼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북한당국도 조속히 납북인사와 여타 남한출신 인사들을 남한의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임을 강조함.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표명
- 1,000만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인권의 문제임.
  - 이 문제는 우리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상응하는 조치와 아울러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

##### 2. 제56차 유엔 인권위원회(2000.3.29)

- 일부 통제체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지속을 개탄(deplor)하고 폐쇄경제체제의 실패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
- 기아상황과 경제적 피폐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이들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 촉구

- 특히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련국가들과 국제기구가 제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

- 3.9 베를린 선언상 이산가족 관련내용을 부각하고 베를린 제의에 대한 북한당국의 호응 촉구

### 3.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2001.4)

- 일부 통제체제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당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공동노력 필요성을 지적
- 난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기아와 경제적 폐폐로 많은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
- 이산가족문제가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라는 인식하에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

### 4. 제53차 유엔인권소위(2001.8)

- 우리나라 출신 박수길 위원은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국제 보호망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결의안」이 채택됨.
-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박해와 기아, 궁핍 등 여타 요인을 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조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들의 인권이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의정서 등 국제 인권협약에 따라 보호되어야 함을 재확인

- 그러한 사람들의 (난민)지위 결정을 위하여 그들에 대한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그들의 필요에 대처하는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 해당 특정집단 사람들의 난민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들이 자신들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난민) 지위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권고

## 국외 입양아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 우리정부는 국외 입양아들이 현지사회에서 정착하여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국외 입양아들이 상호간 친목도모와 한국문화 및 전통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공관의 각종행사에도 초청하여 한국과의 유대감을 유지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 EU 회원국 주재공관장 회의 등 각국에 산재해 있는 입양아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조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

## 해외입양동포 활동 지원 문제

- 정부는 해외입양자녀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하도록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음.
- 입양 동포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모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중한 접근이 요망되는 바, 모국 방문시의 행사 프로그램 지원, 모국어 연수지원, 가족 찾기 지원, 모국관련 자료지원과, 입양동포들이 지역별 모임을 결성, 활동할 경우 동 단체 활동 지원 등이 있으며, 해외 입양동포들이 많은 지역의 재외공관에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0년 주요 지원 실적
    - . 재미입양인 및 입양가족 네트워크 지원 : 12,000천원
    - . 시카고지역 입양인 모국문화체험 지원 : 4,200천원
    - . 시애틀 지역 입양아 여름캠프 지원 : 1,200천원
    - . 오타와 하계입양아 문화캠프 지원 : 1,800천원
    - . 영국입양후원회 주관 '만남의 축제' 지원 : 3,762천원
    - . 스웨덴 입양인 여름캠프 지원: 3,600천원
    - . 네덜란드 입양인 '새해맞이 축제' 지원 : 1,200천원

프랑스 입양인 신년행사 지원 : 3,496천원

- 2001년 주요 지원 실적

국외입양인 모국 문화 체험 연수(10개국 34명)

국외 입양인 자생단체 활성화지원(7건)

미서북부 입양단체 하계캠프 지원 : 4,083천원

시카고 입양인 가족 피크닉 지원 : 2,634천원

제3차 미주한인입양인 대회 지원 : 6,585천원

영국 제2회 입양인 '만남의 축제' 지원 : 930천원

프랑스 입양인 2001 설날행사 지원: 1,747천원

노르웨이 제2회 세계한인 입양인 대회 지원 : 10,427천원

○ 현재 이들은 2년마다 국제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바, 금년 8

월에는 10여개국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었으며, 2003년 서울 모임에는 약 800명의

입양동포들이 참석할 예정임.

○ 우리부는 앞으로도 입양문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재외동포재단과 입양동포 다수 거주국가 공관  
및 국내입양 단체 등과 협조, 해외입양동포 및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 예정임.